



## [축산법령]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

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년 9월 28일  
농림수산식품부장관

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신고, 농업기계별·규격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산정 및 면세유류 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기계)** ①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이란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(이하 “농림특례규정”이라 한다.) 제14조제1호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콩나물재배업자는 제외한다.

1. 개인
  2.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
  3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
- ②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1의 농업기계로서 신고된 농업기계를 말한다. 다만, 농업용난방기는 육묘(배양·증식을 포함한다), 채소(새싹채소를 포함한다),

화훼, 과수,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용(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) 및 소, 돼지, 닭, 오리, 누에, 관상조류 등 「축산법」에서 정한 가축 사육용에 한하며, 잔디깎는 기계는 잔디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농업기계의 신고 등)** ①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 조합·조합·단체 등(이하 “농가 등”이라 한다.)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(축사,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한다.)가 소재한 지역의 조합에 국세청장의 고시에 따라 농업기계의 보유현황,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. 또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**30일 이내**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농가 등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한 조합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매 **출수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** 재신고하여야 한다.

③ 농가 등이 재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, 농가 등이 질병, 해외여행,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재신고하지 못할 경우 면세유류를 관리하는 조합장은 현지조사 또는 리·통장의 확인 등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.

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면세유류를 관리하는

조합은 해당 기간 안에 재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연간공급기준량 및 조합별 한도량 배정)** ①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은 별표2의 기종별·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3의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가 산정할 수 있다.

1. 한·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50%범위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.
  2. 윤활유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%이내로 한다. 다만, 농용트랙터는 3%이내로 한다.
-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의 농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, 농기계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농업용 면세 석유류 제품별 소요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 석유류의 소요량을 검토하여 석유제품별 연간 소요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다.
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신청한 석유제품별 소요량을 감안하여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.
- 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의 범위내에서 조합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하여 관리토록 한다. 이 때, 조합별로 영농형태의 특성에 따른 석유제품별 수요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배정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.
- ⑦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면세유류를 관리하는

조합은 원활한 농업용 면세유류의 관리를 위하여 일정 물량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.

**제5조(농기계별 배정 등)** ① 조합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농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, 별표4의 농업기계별 작업가능 조건표와 영농규모, 재배작목 등을 참고하여 석유제품별·월별 공급한도량을 농가 등에 배정한다.

- ② 난방용 면세유의 경우 재배작목·면적·사육규모 등의 수요를 감안하여 별표5, 별표6 및 별표7의 조건표 범위내에서 배정하며, 농업용난방기 조건표에 표기되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유사작물을 준용(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)하고 조건표에 표기되지 않은 가축 등에 대해서는 농가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사용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유류사용 사육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(별표8)
- ③ 조합장은 농업인 등의 면세유 추가 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별표9의 작목별 영농면적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다. 다만, 농기계별 공급기준량을 초과할 경우는 추가공급사유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읍·면·동장은「통계법」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량조사(폐농기계를 포함한다)를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조합장에게 12월 20일까지 통보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조합장은 읍·면·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농기계 보유현황 자료, 동절기 농업용 난방기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.
- ⑥ 조합장은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기계용 면세유의 경우 읍·면·동장 등의

확인을 거쳐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.

⑦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조합장, 조합공동사업 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(농업용난방기는 제외)를 농업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 또는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장은 사용시간,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.

⑧ 농가 등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있을 경우 일정 시점을 정하여 조합의 유보량으로 회수하여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전배할 수 있다. 다만, 배정량이 회수된 농가 등이 당초 배정량의 범위에서 재배정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 없이 우선 배정할 수 있다.

⑨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가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,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을 회수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사용)** ① 농업용 면세유류는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, 면세유류카드 등에 배정된 농업용 면세유류의 연간 배정량은 당해연도 1.1일부터 12.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

②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은 해당 조합 또는 농장 등이 소재하는 시·군 관내의 지정된 석유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조합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시·군의 인접 시·군까지로 카드 사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. 단, 중유 및 가스 구입시는 인접지역을 벗어난 석유판매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.

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

드의 발급·관리 등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여 농업용 면세유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사후관리)**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, 석유판매사업자, 면세유류관리기관 등에 대한 조사·단속·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, 석유판매사업자, 면세유류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, 점검결과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년4회 이상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조합 또는 농가 등을 선정하여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점검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조합 또는 농가를 달리하여야 한다. 점검결과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시행하여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, 면세유류 사용량이 직전년도에 연간 1만리터(ℓ)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·비치하고 점검자 요구시 제출하는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.

⑤ 조합장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등의 신고내용이 맞는지 점검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, 특히 동절기에는 1회이상 농업용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기타)**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

특례규정 및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농업  
기계용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9. 10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)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용  
면세유류 공급요령(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-  
323호, 2009년 9월 15일)은 폐지한다.

제3조(재검토키한) 이 고시는 2012년 9월 30일 이전  
에 재검토히는다.

## 별표6

### 축산용 용량조건표

#### 1. 양계

| 구분 | 계사<br>형태 | 공 급 량 (2/회)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|          | 5,000수      | 10,000수 | 15,000수 | 20,000수 | 25,000수 | 30,000수 | 35,000수 | 40,000수 |
| 강원 | 무창       | 740         | 1,480   | 2,220   | 2,960   | 3,700   | 4,440   | 5,180   | 5,920   |
|    | 개방       | 860         | 1,720   | 2,580   | 3,440   | 4,300   | 5,160   | 6,020   | 6,880   |
| 중부 | 무창       | 580         | 1,160   | 1,740   | 2,320   | 2,900   | 3,480   | 4,060   | 4,640   |
|    | 개방       | 650         | 1,300   | 1,950   | 2,600   | 3,250   | 3,900   | 4,550   | 5,200   |
| 남부 | 무창       | 450         | 900     | 1,350   | 1,800   | 2,250   | 2,700   | 3,150   | 3,600   |
|    | 개방       | 490         | 980     | 1,470   | 1,960   | 2,450   | 2,940   | 3,430   | 3,920   |
| 제주 | 무창       | 310         | 620     | 930     | 1,240   | 1,550   | 1,860   | 2,170   | 2,480   |
|    | 개방       | 350         | 700     | 1,050   | 1,400   | 1,750   | 2,100   | 2,450   | 2,800   |

주) 1. 양계농가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신청시 입추수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, 출하한 후에는 출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을  
지역조합에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연 6회이상 사육시는 지역조합에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음.

2. 오리는 단위 면적당 사육마리수, 내한성 등을 감안 양계 대비 2배 공급량 산정

3. 사육마리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간법으로 산출하여 공급량 산정

